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 1361 호 2022. 9. 15.(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5호[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6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7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1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1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43호[2022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26

| | |
|--------|--|
| 안 내 |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63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

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 개정(안 제4조)
 -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 관련 근거법령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 상향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 : 7년 동안 100분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 경감
→ 15년 동안 면제(100분의 100 감면)
 -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 : 7년 동안 100분의 50,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30 경감
→ 10년 동안 100분의 50 경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효행·봉사·교육·환경”을 “지역사회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경제·문화·체육”을 “주민화합·봉사·효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3. 교육·문화·체육 부문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심사기준) 제2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경우

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 계승, 주민 여가 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만 20세 이상의 구민”을 “구민 누구나”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구민대상 시상 부문을 세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대상 시상부문의 세분화 (안 제2조제1항)
- 나. 구민대상 심사기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울산 북구 실버케어 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공업로 167(중산동) | |
|-----------------|-------------------------|--|

조례 제1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수 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

수 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해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인 장수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22년 8월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101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 축하금 지급 적용례 부칙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안 별표 1)
- 나. 장수 축하금 지급 첫 해 101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안 부칙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함은”을 “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08:00”을 “09: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사용자 · 수강료 · 이용료”를 “따른 사용자 · 수강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을 “(사용료·수강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제1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구분 | 규 모 | 기 준 | 사용료(원) | |
|-------|----------------------|-----|---------|---------------|
| | | | 평일 | 토·일요일, 공휴일 |
| 공연장 | 453석 | 1일 | 286,000 | 30퍼센트 가산 |
| | | 오전 | 58,000 | |
| | | 오후 | 85,000 | |
| | | 야간 | 143,000 | |
| 연습실 | 119.7m ² | 오전 | 20,000 | 평일과 같음 |
| | | 오후 | 30,000 | |
| | | 야간 | 50,000 | |
| 전시실 | 168.9m ² | 1일 | 30,000 | |
| 다목적교실 | 187.9m ² | 1회 | 30,000 | |
| 야외공연장 | 224.51m ² | 오전 | 20,000 | 평일과 같음 |
| | | 오후 | 30,000 | |
| | | 야간 | 50,000 | |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5.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 시 설 명 | | 기준 | 사용료(원) | 비 고 |
|---------------|----------|-----|------------------------|---|
| 피아노 | 그랜드형 | 1회 | 20,000 |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 | 업라이트 | 1회 | 10,000 | |
| 무대시설 | 덧마루 | 1회 | 20,000 | |
| | 합창대 | 1회 | 20,000 | |
| | 댄싱플로어매트 | 1회 | 50,000 | |
| 음향시설 | 기본음향 | 1회 | 100,000 |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 | 음향반사판 | 1회 | 20,000 | |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 | CD플레이어 | 1회 | 20,000 | |
| | 유선마이크 | 1개 | 3,000 | |
| | 무선마이크 | 1채널 | 10,000 | |
| 무대조명 | 기본조명 | 1회 | 100,000 |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 | 드라이아이스기 | 1회 | 20,000 | |
| | 포그머신 | 1회 | 20,000 | |
| | 헤이저머신 | 1회 | 20,000 | |
| | 팔로우스팟라이트 | 1대 | 20,000 | |
| | 무빙라이트 | 1대 | 30,000 | |
| 냉·난방 | 공연장 | 1시간 | 난방 60,000 냉방 45,000 | |
| | 연습장 | | 난방 20,000 냉방 20,000 | |
|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 | 1회 | 취득가액의 3퍼센트 | |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 구 분 | 기 준 | 수강료 | 비 고 |
|------|-----------|------------|---|
| 일반강좌 | 주1~2회 2시간 | 월50,000원이하 |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 특 강 | 주1~2회 2시간 | 월20,000원이하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03년 조례 제정 당시 정해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기본 이용료를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 수강료 감면 대상, 공연장 사용시간, 공연장 부대시설 추가 장비 사용료, 놀이방 이용료 등 현행 운영체계와 불합치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자 판매 수입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관 사용시간 변경(안 제12조제1항)

- 오전 사용 시작시간 08:00 → 09:00로 변경

나. 공연장 사용료 특례 삭제(안 제13조제1항)

- 대관자에게 판매수입 총액의 5%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다.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에 대하여 수강료 20% 감면

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 2)

- 공연장 사용료 1일 기준 220,000원 → 286,000원(30% 인상)
- 문화교실 대관 삭제(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대관 불가)
- 부대시설 사용료 정비(기본음향·조명 인상, 추가장비 인하)
-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삭제(이용자 복지시설로 무료 개방)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
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한”을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판단후”를 “판단 후”로,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을 “(입장권의 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뒷면 허가조건 5번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원의 종류와 회비(제3조제1항 관련)

| 종 류 | 기 준 | 회 비(연간) | 비 고 |
|-----|------------------|----------|---------------------------------------|
| 일 반 | 성인 1명 | 20,000원 | |
| 부 부 | 성인 2명 | 30,000원 | |
| 가 족 | 성 인 2명 청소년 2명 | 40,000원 | 성 인 1명 추가 10,000원 청소년 1명 추가 5,000원 |
| 청소년 | 청소년 1명 | 10,000원 | |
| 단 체 | 10명 기준 | 150,000원 | |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신청 내역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
| 사용기간 및 시간 | | | |
| 사용시설 | 기본시설 | | |
| | 부대시설 | | |
| 기 타 | | | |
| 변경 사유 | |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자 판매 수입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권 정산에 따른 사용료 추가 징수 내용 삭제(안 제8조제3항)

- 조례 제13조제1항과 연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나.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 대관시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 사용자 구성, 문화예술회관 내 상행위 금지 등 안내

- 조례 제10조(사용제한)에서 상업적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관 사용자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서약서에 명기

다. “입장권정산서” 서식 삭제(안 별지 제14호서식)

- 조례 제13조제1항과 연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14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 | | |
|----------|---|--------------|-----------|---|
| 성명 |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송재호 | | | |
|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260-10 | | | |
| 점용 위치 | ○ 울산광역시 복구 | 신현동 958-24번지 | 하천의 명칭 | ○ 정자천 |
| | | 신현동 967번지 | | |
| | | 신현동 213번지 | | |
| 점용 내용 | ○ 공작물의 신축(도시가스관 매설) | | 점용 면적 | ○ 일시: 91.80m ² ○ 계속: 5.61m ² |
| 점용 기간 | ○ 일시: 2022. 9. 13. ~ 2022. 10. 27. ○ 계속: 2022. 10. 28. ~ 2026. 12. 31.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1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도로명주소 | 소재지 지번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
| 매곡로 93-4 | 매곡동 540 | 2022. 09. 15. | 건축물 멸실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243호

2022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2년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 구 분 | | 접종기간 | 지원대상 |
|-----|--|-------------------------------|--|
| 어린이 | - 2회 접종 대상자 | `22.9.21.(수) ~ `23.4.30.(일) |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2009.1.1.~2022.8.31.출생자) |
| | - 1회 접종 대상자 | `22.10.5.(수) ~ `23.4.30.(일) | |
| 임신부 | - | `22.10.5.(수) ~ `23.4.30.(일) | 임신부 (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 |
| 어르신 | - 만 75세 이상 어르신 | `22.10.12.(수) ~ `22.12.31.(토) | 1947.12.31. 이전 출생자 |
| | - 만 70~74세 어르신 | `22.10.17.(월) ~ `22.12.31.(토) | 1948.1.1.~1952.12.31. 출생자 |
| | - 만 65~69세 어르신 | `22.10.20.(목) ~ `22.12.31.(토) | 1953.1.1.~1957.12.31. 출생자 |
| 지자체 | - 만 14~64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 `22.10. 24.(월) ~ 백신 소진시 | 1958.1.1.~2010.12.31. 출생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

* 2회 접종 대상자: 2022.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및 처음 받는 생후 6개월~만 8세 소아의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1회 접종 대상자: 2022.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및 만9세 이상

○ 접종기관: 울산시티병원 외 55개소

| 동별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어르신 | 어린이 | 임신부 |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
|--------------|--------------|----------|-----|-----|-----|-------------------|
| 호계동 (7개소) | 365호계내과의원 | 295-1190 | ● | | | ● |
| | 김환근내과의원 | 295-6996 | ● | | ● | |
| | 울산엘리아병원 | 290-2100 | ● | ● | | ● |
| | 세나요양병원 | 290-2000 | ● | | | |
| | 이순일내과의원 | 282-7588 | ● | ● | | |
| | 청십자흥부외과의원 | 295-5919 | ● | | | |
| |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 293-5588 | ● | | | |
| 화봉동 (5개소) | 굿닥터연합의원 | 261-7553 | ● | | | |
| |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 287-4287 | ● | ● | ● | |
| | 김유홍내과의원 | 288-9693 | ● | ● | ● | |
|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289-2075 | ● | ● | | ● |
| | 홍찬의소아과의원 | 281-0756 | ● | ● | ● | |
| 천곡동 (6개소) |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 94-7504 | ● | ● | ● | ● |
| | 민사랑내과의원 | 292-1111 | ● | ● | ● | |
| | 새현대의원 | 291-3770 | ● | ● | ● | |
| | 연희가정의학과의원 | 295-0800 | ● | ● | | |
| | 영남이비인후과의원 | 286-8277 | ● | ● | ● | |
| | 정안요양병원 | 295-2888 | ● | | | |
| 매곡동 (7개소) | 다정의원 | 282-0127 | ● | ● | ● | |
| | 드림아이의원 | 295-0129 | ● | ● | ● | |
| | 봄소아청소년과의원 | 286-1311 | ● | ● | ● | |
| |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 281-1231 | ● | ● | ● | |
| |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 977-1000 | ● | ● | ● | |
| | 아이마음아동병원 | 761-5170 | ● | ● | ● | ● |
| | 웰당이진우내과의원 | 292-7179 | ● | ● | | |
| 신천동 (6개소) | 복음요양병원 | 268-7000 | ● | ● | ● | |
|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 291-2975 | ● | ● | | |
| | 울산아동병원 | 282-7171 | ● | ● | ● | ● |
| | 엠디한방병원 | 286-3355 | ● | | ● | |
| | 한빛이비인후과의원 | 286-7613 | ● | ● | | |
| | 호계연합내과방사선과의원 | 286-7585 | ● | | | |
| 양정동 (5개소) | BB요양병원 | 716-1020 | ● | | | |
| | 윤가정의학과의원 | 287-2300 | ● | ● | ● | |
| | 이기호내과의원 | 287-6187 | ● | | | |
| | 하나정형외과의원 | 287-9852 | ● | ● | | |
| | 한소아청소년과의원 | 288-0075 | ● | ● | ● | ● |

| 동별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어르신 | 어린이 | 임신부 |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
|--------------|--------------|----------|-----|-----|-----|-------------------|
| 연암동 (3개소) | 김현경의원 | 287-0314 | ● | ● | | |
| | 울산시티병원 | 280-9000 | ● | ● | ● | |
| | 현대연합의원 | 291-9800 | ● | ● | | |
| 송정동 (4개소) | 몸바른의원 | 222-7575 | ● | ● | ● | |
| |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 251-3336 | ● | ● | ● | |
| | 탐이비인후과의원 | 249-7582 | ● | ● | ● | ● |
| | 송정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 | 297-8200 | ● | ● | ● | |
| 명촌동 (3개소) | 김은정소아과의원 | 288-5510 | ● | ● | ● | |
| | 이내과의원 | 289-1066 | ● | ● | | ● |
| | 행복한내과의원 | 283-2299 | ● | ● | | |
| 상안동 (3개소) | 농소요양병원 | 282-7002 | ● | | | |
| | 조윤성내과의원 | 293-7171 | ● | | | |
| |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 294-8275 | ● | ● | ● | |
| 중산동 (2개소) | 김영근의원 | 282-3770 | ● | ● | | |
| |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 268-6575 | ● | ● | ● | |
| 염포동 (2개소) | 구암의원 | 287-7246 | ● | ● | | ● |
| | 함께하는의원 | 289-7046 | ● | ● | ● | |
| 산하동 (2개소) | 한결의원 | 268-8227 | ● | ● | ● | ● |
| | 강동오션키즈의원 | 258-1004 | ● | ● | ● | |
| 정자동 | 강동의원 | 298-7534 | ● | | | ● |

※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246~7)